

	교육과정편성운영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5. 10. 1.
		최종개정일자	2019. 7. 1.
		담당부서	교육혁신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대학 이념과 교육목표,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, 학생 및 수요자 요구사항 등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과정의 영역) 교육과정은 전공과정, 교양과정, 교직과정으로 나눈다.

제3조(교육과정의 편성원칙) ①교육과정은 교양필수, 교양선택, 전공필수, 전공선택으로 구성한다.

②학과교육과정은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연계되도록 하며, 각 학과의 교육목표, 학문의 체계와 변화, 사회적 필요와 발전 동향, 학생 및 산업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.

③교양교육과정은 예비 직업인이 갖춰야 할 기초소양, 직업기초능력, 기초학습능력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함으로써,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.

④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연계되도록 편성한다.

⑤교과이수에 있어 학점과 이수시간을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총장의 승인 후 조정, 편성할 수 있다.

⑥교육과정 학점배정은 다음 표와 같다.

편성(개설)학점 및 개설시간				
구분	총 편성(개설) 학점	교양학점	전공학점	총 개설시간
2년제	80학점 이내	8학점 이상	72학점 이내	90시간 이내
3년제	120학점 이내	12학점 이상	108학점 이내	130시간 이내
4년제	150학점 이내	14학점 이상	136학점 이내	160시간 이내

⑦교육과정 학점배정은 학과특성 및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.

⑧동일 명칭으로 2개 학기 이상 연강하여 개설되는 교과목은 교과목명칭 뒷자리에 I, II, III, IV 등으로 표시한다.

⑨교직과목 설치학과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기본이수 영역과목을 반드시 편성하여야 한다.

⑩교양교육과정의 직업기초능력은 필수로 편성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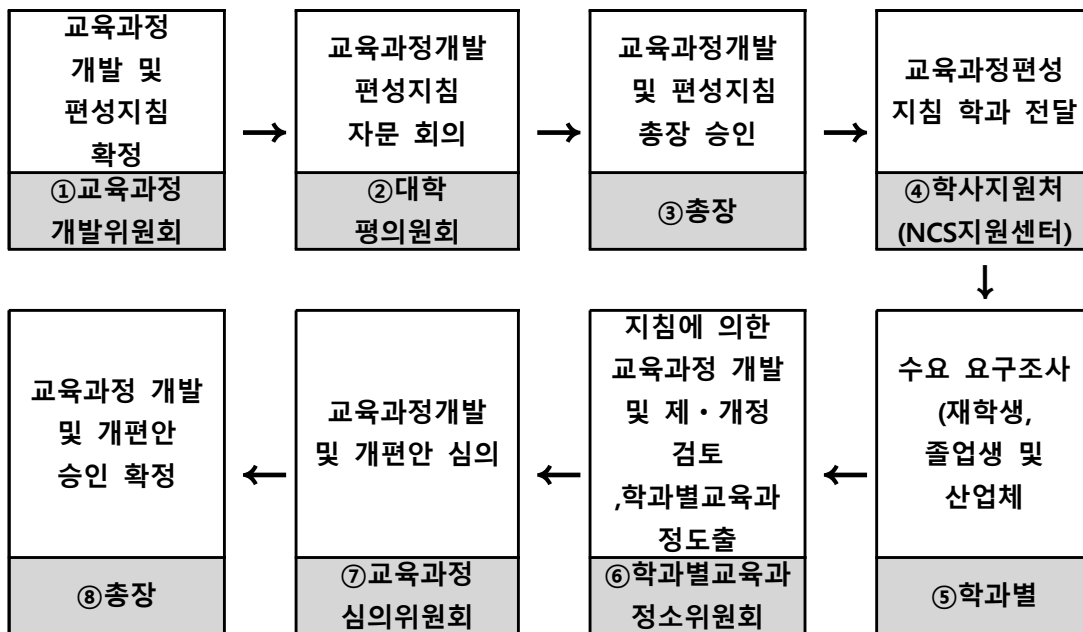
제3조의 2(NCS기반 교육과정) ①대학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완성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,

②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학위, 비학위 통합과정의 운영이 용이하도록 모듈 복수의 모듈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.

1. 공업계열 50%이상
2. 인문사회계열 10%이상
3. 자연과학계열 30%이상
4. 예체능계열 50%이상

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특성 및 관련 법령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편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과정개발·편성절차)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.



제9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